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지침

2025. 5.



I. 유통량 조사의 원칙

1. **조사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의 반입·반출량, 반입·반출수송수단 등을 조사하여 전국 위험물 유통 실태를 분석
2. **조사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3. **조사년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이 기간내에 있는 경우 기재하여 제출
4. **조사대상** :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완공검사까지 완료된 제조소등)한 모든 **사업장**
※ 조사제외대상 : ①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만을 설치한 사업장, ② 군부대
5. **작성주체** : 제4호 조사대상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조사단위** : 동일 사업장* 단위

* 동일 사업장 : 동일인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체(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법인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예1) 동일인이 동일주소에 A사업장(동일업체)을 운영하고 업체 내에 제조소1, 옥내저장소2, 옥외탱크저장소4를 허가받은 경우

- 동일 사업장이므로 A사업장 경계(동일 주소 울타리 내의 모든 제조소등 포함)를 기준으로 사업장 외부로부터의 위험물 반입량 및 사업장 외부로의 위험물 반출량을 파악(각 제조소등 별로 유통량을 각각 계산하여 기재하지 않음)

예2) 동일인이 B사업장(동일업체)를 주소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 동일주소가 아니므로 동일 사업장이 아님. 따라서 각 주소별로 유통량을 조사하여 각각 제출

예3) 동일인이 동일 주소에 C, D, E 업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각 업체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

- 동일업체가 아니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조사(제4호의 조사대상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7. **조사방법** :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여 제4호(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본인의 사업장을 기준사업체로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위험물을 반입한 정보 및 사업장에서 반출한 정보를 조사



8. **조사범위** : 해당 사업장에 반입·반출되는 모든 위험물을 조사하여 기재하되, 위험물의 품명단위로 연간 반입량 또는 반출량이 지정수량의 1배수 이상 위험물(업체가 아님에 유의)에 대해서 기재

※ 공항, 항만 및 공항/항만 소재 터미널회사의 경우 수출입을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 등으로 반입·반출되는 위험물은 기재하지 않음 (RTDG를 기반으로 한 위험물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 분류체계와 상이)

다만, 공항 및 항만 소재 터미널회사라 할지라도 수출입이 아닌 항만등의 운영(난방 등)과 국내 운송·운반용으로 위험물을 반입·반출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에 한하여 기재

- 예1) 제4류 알코올류인 메탄올의 연간 반입량이 200리터인 경우 알코올의 지정수량은 400리터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예2) 제4류 알코올류인 메탄올의 A, B, C, D 업체로부터 각각 연간 200리터를 반입하여 총 반입량이 800리터인 경우 위험물(메탄올)의 반입량이 지정수량의 1배수가 넘었으므로 A, B, C, D업체로부터의 반입정보를 모두 기재
- 예3) 제4류 알코올류인 메탄올을 300리터, 에탄올을 200리터 반입한 경우 품명단위로 제4류 알코올류를 500리터 반입하였으므로 반입정보 기재

9. **제출방법** :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ttps://hazmat.nfa.go.kr/>) 자료실 또는 소방청-소통/민원-민원·질의-각종서식 (<https://www.nfa.go.kr/nfa/communication/complaint/template/>)에서 유통량조사 서식(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소방서에 제출

※ 다운로드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소방서에 유통량조사 서식(엑셀파일) 제공 요청

II. 유통량 조사 서식

1. 조사서식(전체)

반입·반출 정보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조사연도	조사연월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2. 조사서식(기준업체 정보 기재부분)

반입·반출 정보												
** 반입·반출 정보는 모든 항목이 필수 입력값입니다. 공백을 없이 입력해주세요.												
조사연도	기준사업체	(기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할분부	관할소방서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화번호3
2024	사업체명1	111-11-11111	000000-0000000	서울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두동	김대표	02	1234	5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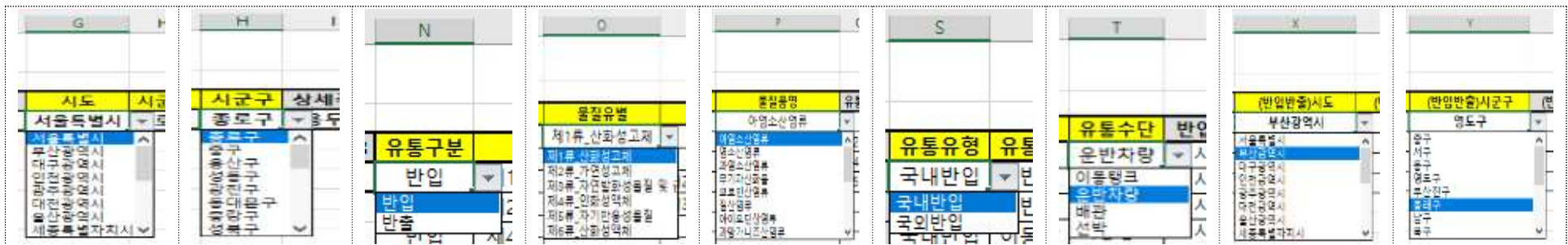
3. 조사서식(반입·반출정보 기재부분)

유통구분	통계유형	통계품명	유통량	단위	유통유형	유통수단	반입/반출업체	(반입반출)사업자등록번호	(반입반출)법인등록번호	(반입반출)시도	(반입반출)시군구	(반입반출)상세주소	(반입반출)대표자명	(반입반출)전화번호1	(반입반출)전화번호2	(반입반출)전화번호3
반입	제1류_간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300	킬로그램	국내반입	운반차량	사업체명1	222-22-22222	000000-0000000	부산광역시	명도구	ㅇㅇ로 1212	홍길동	000	111	1234
반입	제2류_가연성고체	인화성고체	2000	킬로그램	국내반입	운반차량	사업체명2	111-11-11111	111111-2222222	대구광역시	중구	ㅇㅇ로 13	변학도	000	222	1234
반입	제4류_인화성액체	제2석유류_비수용성액체	4000	리터	국내반입	이동탱크	사업체명3	222-21-45675	111111-2322222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로 18	최소방	000	333	1234
반출	제4류_인화성액체	제3석유류_비수용성액체	5000	리터	국내반출	이동탱크	사업체명4	121-55-89704	111111-3231222	경상북도	여주시	ㅇㅇ로 152	박소방	000	441	1234

Ⅲ. 유통량 조사 작성요령

[작성 원칙]

1. **(업체명)** 기준사업체 및 반입·반출업체명(B열 및 U열)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을 정확히 기재
 ※ (주) 부분도 생략하지 않고 기재
2.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사업체 및 반입·반출업체 사업자등록번호(C열 및 V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등록증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번호: 123-12-12345” 를 기재(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안됨)
3.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D열 및 W열)는 “000000-0000000(6자리-7자리)” 형태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업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재
4. **(상세주소)** 상세주소(I열) 및 (반입반출)상세주소(Z열)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되,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행정주소 기재
5. **(필수항목)** 유통정보(N열~R열) 및 반입·반출업체 정보(U열~AD열)의 각 셀은 필수 입력항목으로 공백없이 모두 기재
6. **(드롭다운 형식)** 기준사업체의 시도(G열), 시군구(H열)와 반입/반출업체의 유통구분(N열), 물질유별(O형), 물질품명(P열), 유통유형(S열), 유통수단(T열) 및 (반입반출)시도(X열), (반입반출)시군구(Y열)은 직접입력이 아닌 드롭다운형식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형식을 지우지 말고 선택 필수



잘못된 사례1) 드롭다운형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나 일반셀을 복사하여 수기입력(그림1 참조)

잘못된 사례2) 셀을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려 잘못된 정보가 기재(그림2 참조)

유통구분	물질유별	물질품명	유형
반입	제1류_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반입	제2류_가연성고체	인화성고체	
반입	제4류_인화성액체	제2석유류_비수용성액체	
반출	제4류_인화성액체	제3석유류_비수용성액체	
반입	제4류	제2석유류	

그림1(빈셀을 복사하여 임의로 기재)

제4류_인화성액체	제3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5류_인화성액체	제4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6류_인화성액체	제5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7류_인화성액체	제6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8류_인화성액체	제7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9류_인화성액체	제8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10류_인화성액체	제9석유류_비수용성액체
제11류_인화성액체	제10석유류_비수용성액체

그림2(복사를 위해 긁어내려 오류 발생)

7. (유통량) 유통량(Q열)은 숫자 정수만 기재[물질유별에 따라 단위(R열)가 자동고정되므로 단위(리터 또는 킬로그램) 유의]

잘못된 예1) 단위를 기재하는 경우: 300kg, 2,000리터, 2,000L, 3000KL

잘못된 예2) 소수를 기재하는 경우: 3000.24

8. (유통수단) 유통수단(T열)은 기준사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경계를 통과하는 수송수단을 선택하며, 이동탱크, 운반차량, 배관, 선박 중 드롭다운으로 선택

※ "이동탱크"는 차량에 탱크를 고정시키고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여 탱크내부의 위험물만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탱크로리를 말함

※ "운반차량"은 컨테이너차량, 카고트럭과 같이 위험물을 용기에 담고 그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탱크 이외의 차량을 말함

※ “배관”은 위험물 반입 또는 반출시 사업장의 경계를 통과하는 수단이 배관인 경우를 말함

※ “선박”은 위험물 선박이 사업장 경계 내부로 들어와 사업장내 배관을 통해 위험물을 입고 또는 출고하거나, 위험물용기 운반 선박이 사업장 경계 내부로 들어와 부두에서 용기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에 선택

9. (물질품명) 위험물은 품명에서 제1류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3류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5류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6류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으로 판정된 위험물의 경우 물질품명은 **함유한 품명을 선택함**

예) 제1류 질산염류를 80%함유하고 품명이 “질산염류를 함유한 것”인 것은 질산염류에 포함하여 기재함

- 순수한 질산암모늄을 1000kg, 질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을 2000kg 반입하는 경우 질산염류 3000kg 반입한 것으로 기재

10.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반입·반출하더라도 반입·반출업체 또는 유통수단이 다른 경우 개별 행에 각각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기준사업체의 정보(B열~M열)는 유통량조사 대상인 기준사업체의 정보를 기재하며 맨 위 1줄(4행)만 작성
2. 반입·반출업체 정보는 실제 위험물이 반입 또는 반출되는 업체의 정보를 기재함이 원칙. 단, 실제 위험물 반입 또는 반출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 계약서상의 업체정보를 기재하고 업체명 뒤에 “(계약)” 추가 기재함
예) 반입/반출업체명 : GS칼텍스(계약)
3. 기준사업체가 탱크터미널과 같이 탱크임대·위험물보관업만을 하는 업체(이하 “보관업체”라 한다.)에 판매가 아닌 임시로 위험물을 보관시키는 등 경유(經由)만을 하는 경우 기준사업체는 보관업체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유통현황은 기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해당 위험물을 판매한 업체의 정보를 반출업체 정보로 기재
4. 보관업체의 경우 위험물 반입 및 반출업체 정보는 임시 보관을 요청한 화주업체의 정보를 기재함(보관을 요청한 업체(화주업체)와 반출업체간의 계약을 통해 반출되어 탱크터미널은 반출업체 정보 확인 불가)
5. 기준사업체에서는 입력 대상인 반입·반출업체가 유통량조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함. 다만,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 ①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만을 설치한 사업장, ② 군부대
※ 유통량조사 제외대상은 기준사업체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체로 반입·반출업체로는 기재되어야 함
6. 반입 또는 반출의 방법이 수입 또는 수출인 경우 아래의 각목을 따름
 - 가.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해 항만, 항 또는 공항 소재의 터미널사를 이용하는 경우 반입·반출업체는 터미널사의 정보가 아닌 항만, 항 또는 공항의 정보를 기재
 - 나. 위험물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유통유형(S열)에서 국외반입 또는 국외반출을 선택하고 위험물이 하역 또는 선적되는 공항 또는 항만의 정보를 기재(실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국외업체 정보 기재하면 안됨)

다.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 사업장 내부의 자체 부두에서 직접 선박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 및 반출업체명에 기준업체의 명과 부두명을 함께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준업체의 번호를 기재하며, 소재지에는 부두소재지 주소를 기재하고, 유통수단은 선박이라 기재

예1) XX업체의 자체 3부두(XX업체와 동일주소)를 통해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반입업체는 “XX업체 3부두”라 기재하고, 그 외의 사항은 XX업체의 정보를 기재

예외) XX업체의 자체 3부두이나 그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이 아니므로 XX업체의 유통량 조사와 XX업체 3부두의 유통량조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함

※ [반입반출정보 기재 예시]

유통 구분	물질유별	물질품명	유통량	단위	유통유형	유통 수단	반입/반출업체	(반입반출) 사업자등록번호	(반입반출) 법인등록번호	(반입반출) 시도	(반입반출) 시군구	(반입반출) 상세주소	(반입반출) 대표자명	(반입반출) 전화번호1	(반입반출) 전화번호2	(반입반출) 전화번호3
반입	제1류_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300	킬로그램	국내반입	운반차량	사업체명1	222-22-2222	000000-00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로 1212	홍길동	000	111	1234
반입	제2류_가연성고체	인화성고체	2000	킬로그램	국내반입	운반차량	사업체명2	111-11-1111	111111-225222	대구광역시	중구	○○로 13	변학도	000	222	1234
반입	제4류_인화성액체	제2석유류_비수용성액체	4000	리터	국내반입	이동탱크	사업체명3	222-21-45875	111111-232222	경상남도	창원시	○○로 18	최소방	000	333	1234
반출	제4류_인화성액체	제3석유류_비수용성액체	5000	리터	국내반출	이동탱크	사업체명4	121-55-89784	111111-2231222	경상북도	여주시	○○로 152	박소방	000	441	1234